

## 2023년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
「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 및 「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4일

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

### I 지정목적

- 농업·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·지원하고, 사회 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,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#### <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>

- ◆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 설립한 기업으로서,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는 기업

## II

## 지정요건

- ◆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(고용노동부) 준용

### 1] 조직형태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- ①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  - ②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  - ③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  - ④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  - ⑤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 - ⑥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 - ⑦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 -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\*
- \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

### 2]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-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

○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

\*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
○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(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)

\*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

**※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별도 요건**

○ 농업·농촌 본래의 사회적(공익적) 가치를 인정하여,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\* 여부로 적합성 판단

\* 농촌 인구 유지, 청년 농업인 육성,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,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

\*\* '직전' 연도 「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」의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합 여부 인정

**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■**

① 사회서비스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
② 일자리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
③ 지역사회공헌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

㉠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이하 "지역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

100분의 20 이상일 것

- ㉞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  - ㉟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  - ④ 혼합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
  - ⑤ 기타(창의·혁신)형: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
- ※ 농업·농촌 본래의 사회적(공익적) 가치를 인정하여,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\* 여부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적합성 판단
- \* 농촌 인구 유지, 청년 농업인 육성,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,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

###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
-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  - \*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
\*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

- 사업기반(사업장, 근로자 등)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

####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  -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- \*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
-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

#### ■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■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단, 보건 의료사업은 제외)

## ㉔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  -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
  - 적용기준: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 여부(위반사항 해소 포함)로 판단
    - \* 예시('21.4.1. 신청): 지정신청 기업이 '21.4.20.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(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)
    - \* 예시('21.4.1. 신청): 지정신청 기업이 '21.1.20.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
    - \*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
-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

## ㉕ 지정 제한

- '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'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
-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(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) 신청제한

-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: 2017.1.1. 신청 분부터 적용, 부처형·지역형 합산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·취소되거나,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·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  - \*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
    -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
    -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
    -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
    -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
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,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)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

## ① 신청 및 접수

- (접수기간) 2023. 9. 4. ~ 9. 24.(공휴일 포함)
- (신청 및 접수)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,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,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하여 제출[별지 제1호 서식]
  - \*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·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에 등록
  - \*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
  - \*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: 1661-4006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로 송부

## ② 지정 절차

- 서류검토,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
## ■ 제출서류 ■

- 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[별지 제1호서식]
-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[별지 제2호서식]
-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법인설립허가증, 대표자 이력서, 임대차 계약서 등
  -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
-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기업만 제출)

[별지 제2호의2~제2호의6서식]

- ⑤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[제2호의7서식] (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)
  - ※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4대보험)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,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
- ⑥ 사업자등록증명,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 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, 부가세신고내역, 거래처별합계표, 납세증명)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기업만 제출,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)
  - 실적기간: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(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)
  -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(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)
- ⑦ 정관·규약 등
  -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
  - 사단·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·개정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가능
- ⑧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[별지 제6호서식]
-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[별지 제2호의8서식]
- 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,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
  - \* 지방자치단체,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(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)
  - \*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- ⑪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- ⑫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○ (문의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

-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(지정요건 충족여부, 신청서류 등)
  - \* 전문지원기관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(☎ 031-697-7729, 7723)
  - \* 권역별 통합지원기관(붙임 참조)
-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
  - \*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(☎ 044-201-1528)

권역	기관명	주소	전화번호	팩스번호	이메일
강원	(사)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	강원도 원주시 반구로354-27,우리빌딩5층	033-749-3950	033-749-3900	gwse0524@naver.com
경기	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, 상가동 2층 (망포동, 수원영통행복주택)	070-4763-0130	070-4763-0120	pns@pns.or.kr
경남	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, 3층 (명서동, 일웅빌딩)	055-266-7970	0303-0945-7945	moducoop@moducoop.com
경북	(사)지역과소셜비즈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, 본부동 3층 301호(삼풍동, 경북테크노파크)	053-956-5002	053-267-5003	se@sebiz.or.kr
광주	사회적협동조합 살림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(치평동)	062-383-1136	062-384-1137	ses@socialcenter.kr
대구	(사)커뮤니티와경제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, 5층(동산동, 유창빌딩)	053-956-5001	053-217-5003	ucsr@hanmail.net
대전 세종	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, 3층(선화동)	042-624-6005	044-863-8676	value@value-plus.kr
		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3, 금강베네치아 211호	044-864-8676		
부산	(재)부산디자인진흥원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, 3층	051-950-1231	051-790-1099	jiu1028@dcb.or.ke
서울	(사)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, 200호(충정로2가, 본관)	02-365-0330	02-365-0440	joyfulunion@naver.com
울산	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	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, 10층(달동, 울산극동방송)	052-267-6176	052-267-6177	ulsan@sescoop.or.kr
인천	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, 6층(주안동, 계림빌딩)	032-446-9492	032-421-9585	inseca@daum.net
전남	사회적협동조합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	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69, 3층	061-337-2110	061-334-2110	jnsi23@naver.com
전북	(사)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, 6층(팔복동1가, 경제통상진흥원)	063-213-2244	063-213-2245	jbse2019@gmail.com
제주	(사)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, 1층(이도일동, 고용복지플러스센터)	064-726-4843	064-755-4843	jejusen2015@hanmail.net
충남	(사)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	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86번길 27-3,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,4층	041-415-2012	041-415-2013	cnse1212@gmail.com
충북	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, 2층(송절동)	043-222-9001	043-223-9201	cbse@hanmail.net

## IV 지정방법 및 기간

### ① 지정방법

- (지정규모)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정규모를 제한하지 않음
- (공고) 부처 홈페이지에 지정결과 공고
- (지정서 발급) 「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」를 교부 [별지 제4호서식]

### ② 지정기간

-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

### ③ 지원내용

-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

<별지 제1호서식>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60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##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

① 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② 대 표 자	
③ 연 락 처	☎ (FAX. )	④ 사업자등록번호	
⑤ 소 재 지			
⑥ 조 직 형 태	<b>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법상 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한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자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민간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생활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·영어조합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·어업회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법인, 비영리단체  <b>2.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단체 등		
⑦ 지정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㉠[ ], ㉡[ ], ㉢[ ])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창의·혁신)형		
⑧ 전체유급 근로자수(A)	명	취약계층 근로자수(B)	명
		취약계층 고용비율(B/A)	%
⑨ 주된 사업내용			
⑩ 업종	⑪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		
⑫ 사업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·예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산림 보전 및 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사 간병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
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### 중앙행정기관장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2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[별지 제2호서식]</li> <li>3.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별지 제2호의2~제2호의6서식) (해당기업만 제출)</li> <li>4. 유급근로자 명부[별지 제2호의7서식] (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)          ※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4대보험)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,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</li> <li>5. 사업자등록증명,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 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, 거래처별합계표, 납세증명)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)</li> <li>6. 정관·규약 등</li> <li>7.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</li> <li>8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[별지 제2호의8서식]</li> <li>9.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(해당기업만 제출)</li> <li>10.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</li> <li>11.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e-러닝 수강(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)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</li> <li>12. 기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</li> </ol>
------	--

##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
### ◆ 기업개요

기업명 (기관명)		대표자	
소재지			
연혁			

### ◆ 인증요건 충족계획

사회적목적유형 신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㉠[ ], ㉡[ ], ㉢[ 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창의·혁신)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
조직형태	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
근로자 고용계획	유급근로자 고용 계획(정규직 00명 등)
의사결정구조	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(운영위원회) 등 운영 계획
정관(규약)	정관(규약) 제·개정 계획 - 의사결정구조,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(개정) 계획

### 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1. 사업 목적 (사업의 필요성)	1-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(소셜미션) :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(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)  1-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(사업필요성)
2. 사업 내용 (영업수입 확보방안)	2-1 구체적 사업내용 2-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-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-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-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3. 사업 역량	<p>3-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: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</p> <p>3-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: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</p> <p>3-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: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: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</p>
4. 사업 목표	<p>4-1 연차별 매출규모</p> <p>4-2 고용창출 계획</p> <p>4-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</p> <p>4-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</p>

◆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1년차	<p>(예시)</p> <p>- 사업장(사업시설) 확보 및 인력 확충</p>
2년차	<p>(예시)</p> <p>-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</p> <p>- 사업장(지점) 추가 확보</p> <p>-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</p>
3년차	<p>(예시)</p> <p>-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</p>

◆ 기타 추진계획

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

\*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(필요시 별지작성)

##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
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취약계층 수혜자(B)		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(B/A)
	명		명		%
취약계층 수혜자	일련번호	이름	생년월일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
				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#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</li> <li>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</li> <li>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<별지 제2호의3서식>

##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	
근로자	전체근로자(A)		취약계층 근로자(B)		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	
	명		명		%	
취약계층 근로자	일련번호	이름	생년월일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	
				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	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#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</li> <li>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</li> <li>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##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		
사업지역		( )시/도 ( )시/군/구					
지역 사회 공헌형 ㉑	일자리 제공	전체 근로자(A)			지역취약계층 근로자(B)	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	
		명			명	%	
	사회서비스 제공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	지역취약계층 수혜자(B)	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	
		명			명	%	
	지역취약계 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	구분	연번	성명	생년월일	해당 취약계층	
		근 로 자	1				
			2				
			3				
		수 혜 자	1				
			2				
3							
지역자원 연계현황	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활용						
	지역주민의 소득·일자리 증대						
지역 사회 공헌형 ㉒	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	해당분야 수입(A)	전체 수입(B)	A/B	해당분야 지출(C)	전체 지출(D)	C/D
				%			%
지역 사회 공헌형 ㉓	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	해당분야 수입(A)	전체 수입(B)	A/B	해당분야 지출(C)	전체 지출(D)	C/D
				%			%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#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구부서류	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※ 비고

1. “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”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
## 기타(창의·혁신)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
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(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)	-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* 사회문제 해결 부분 * 공익적 목적 부분  - 관련 사업 추진 실적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	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



## 노동관계법령의 범위

1. 「근로기준법」
2. 「최저임금법」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4. 「임금채권보장법」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
6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7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8.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9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
10. 「근로복지기본법」
11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12.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1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15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6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)

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(기관용)				
제공기관	기관명		연락처	
	주 소			
수혜자 (수혜기관)	성명 (기관명)		연락처	
	주 소			
사 회 서 비 스 내 용	서비스명			
	제공일시			
	수혜자수			
	수혜대상			
	수혜내용			
	환산금액 (세부내역)			

( )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,  
 ( )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.

20 년 월 일

제공기관 :

대 표 : (인)

수혜기관 :

대 표 : (인)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, 사업자등록상태조회, 예비사회적기업 실적·성과 평가 등에 활용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핸드폰)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- 개인정보의 제공: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성명	
주민등록번호	-